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김정도 의원 외 9인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김정도·김근한·김민성·김재우  
박교상·신용하·이지연·정지원  
추은희·허민근 의원(10인)

### 1. 제안이유

구미시 관내 등록경로당으로 운영 중이지만 무허가건축물인 경로당을  
경로당 양지화 사업을 통해 그 시설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국제정세에 따른 건축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경로당 지원비  
용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  
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 2. 주요내용

가. 국공유지 토지매입비 지원 단서조항 신설(안 제5조제3항)

나. 지원기준 비용 예산범위 상향(안 제6조)

### 3. 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7조

2)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나. 부서검토: 노인장애인과, 공공시설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붙임)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양지화 사업 등으로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유지
2. 구미시 등록 경로당(20년 이상)

제6조제1호 중 “3억원”을 “6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별표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등록경로당으로 운영 중이지만 무허가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시설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생략)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 4. (생략)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 6. (생략)
- ② ~ ③ (생략)

#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7조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 □ 주요 사항

- 경로당 재건축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양성화 사업 등으로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국공유지
      - 2. 구미시 등록 경로당(20년 이상)
  - 별표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등록경로당으로 운영 중이지만 무허가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시설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 경로당시설 지원기준 비용 예산범위 상향
  - 제6조제1호 중 “3억원”을 “6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 □ 검토 결과 : 불임참조

##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무허가건축물로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로당 재건축을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 제공으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
  - 경로당지원기준 현실성반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가능
-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참조
- 문 제 점 : 해당없음.

(붙임)

## □ 검토결과

- 경로당 재건축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소유권이 분명한(등기) 등록경로당의 경우 시 직접지원 또는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부존재 및 소유권의 불분명으로 재건축 및 개보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 4조 제2호 바목의 신설 적용시 등록경로당 중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재건축을 지원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무허가건축물 중 민간소유부지의 경우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재건축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국공유지의 경우 건축부지확보를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불가피함.
  - 재건축시 국공유지로 토지매입비지원을 한정하여 무분별한 토지매입요구를 예방하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제5조 3항의 신설로 국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건축물 경로당의 재건축을 위한 부지매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경로당 지원기준 금액 상향에 관한 사항
  - 건축자재비 폭등(50%이상) 및 인건비인상 등으로 건축비용이 급상승하여 기존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추가공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축 역시 기존지원기준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한 현실임.
  - 현실성을 반영하여 건축비용의 지원기준 금액 상향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공공시설과

조 례 명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li></ul>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경로당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li></ul>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재 30평 규모의 경로당 건립 시 5억 3천만원(평당 1,800만원) 사업비 소요되므로 개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li><li>※ 설계용역비 3천만원, BF 2천만원, 공사비 4억 9천만원(평당 1,630만원)</li></ul>	

#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 등에 따른 세출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연 평균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3개소 추진시 전제
  - 격년 경로당 리모델링 및 증축 1개소 추진시 전제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주민숙원) 도비보조금 지원(사업비의 50%)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 신축 및 재건축비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5,000,000
	○ 증축 및 리모델링			100,000		100,000		200,000
	○ 토지매입비		277,000					277,000
	소계(b)			1,600,000	1,500,000	1,600,000	1,500,000	<b>5,477,000</b>
□ 총 비용(a-b)			1,777,000	1,600,000	1,500,000	1,600,000	1,500,000	<b>5,477,000</b>

##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3,750,000
시비			1,027,000	850,000	750,000	850,000	750,000	4,227,000
민간								
기타								
합계			1,777,000	1,600,000	1,500,000	1,600,000	1,500,000	7,977,000

※ 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주민숙원) 보조금(사업비의 50%) 신청하여 도비 적극 확보

5.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강영도(☎054-480-5151)